

수익사업 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30일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전화번호
	사무소 소재지	
신청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
	사업장 소재지	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2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(같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.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 2.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. 토지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	➔	결재	➔	승인 통보
신청인						국가보훈부장관		